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3-05-31

부 산 지 방 법 원

제 1 행 정 부

판 결

사 건	2022구합607 지방세등 경정청구 거부처분취소
원 고	A
피 고	○○○○시 ○○○청장
변 론 종 결	2023. 3. 9.
판 결 선 고	2023. 4. 20.

주 문

1. 피고가 2022. 3. 28. 원고에 대하여 한 취득세 등 11,730,000원에 관한 환급경정거부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이와 같이 선해하여 판단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3-05-31

가. 원고는 2020. 6. 18. B로부터 ○○ ○○구 C건물 D호(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를 255,000,000원에 매수하였다(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한다). 원고는 B에게 위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하고, 2020. 9. 7. 취득세 10,200,000원, 지방 교육세 1,020,000원, 농어촌특별세 510,000원의 합계 11,730,000원(이하 이를 통틀어 '이 사건 취득세 등'이라고만 한다)을 신고·납부한 후 같은 날 위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2020. 9. 29. 착오 등을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취소한다고 주장하면서, 매도인 B, 중개인 E을 상대로 매매대금의 반환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부산지방법원 2020가합912, 이하 '관련 민사소송'이라고 한다).

다. 위 법원은 2021. 8. 23. 원고와 B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을 하였고, 위 화해권고결정이 2021. 9. 9.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라고 한다).

1. 원고와 B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2020. 6. 18.자 매매계약이 위 부동산의 건축법 위반 사실 존부에 관한 착오로 인하여 취소되었음을 확인한다.
2. 위 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가. B는 원고로부터 2020. 9. 7. 이 법원 등기과 제57685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 및 제57687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 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261,350,000원을 지급한다.
 나. 원고는 B로부터 위 가항의 돈을 지급 받음과 동시에 위 가항 기재 소유권이전등기 및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한다.
3. 원고는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4.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2022. 2. 29.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마쳤다.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3-05-31

마. 원고는 2022. 3. 8. 이 사건 매매계약이 착오로 인하여 취소되었으므로 취득세의 과세객체가 되는 사실상의 취득행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취득세 등 합계 11,730,000원의 환급을 구하는 내용의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는 2022. 3. 28. 이를 거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거부처분'이라고 한다).

바. 원고는 이 사건 거부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조세심판원은 2022. 11. 8.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2. 이 사건 거부처분의 적법 여부[1)]

가. 원고의 주장

확정된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이 사건 매매계약은 착오로 인하여 취소되었고 이에 따라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를 마쳤으므로, 취득세의 과세객체가 되는 사실상의 취득행위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는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를 부담하지 않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이루어진 이 사건 거부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 판단

1) 관련 법리

취득세는 본래 재화의 이전이라는 사실 자체를 포착하여 거기에 담세력을 인정

1) 피고는 제1회 변론기일에서 전심절차 미준수에 관한 본안 전 항변을 철회하였으므로 이에 관하여는 판단하지 않는다.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3-05-31

하고 부과하는 유통세의 일종으로 취득자가 재화를 사용·수익·처분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을 포착하여 부과하는 것이 아니어서 취득자가 실질적으로 완전한 내용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의 여부에 관계없이 사실상의 취득행위 자체를 과세대상으로 하는 것이고, 구 지방세법(2023. 3. 14. 법률 제192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7조 제2항은 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부동산 취득에 관하여 민법 기타 관계 법령에 의한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 취득한 것으로 보고 있으므로, 부동산에 관한 사실상의 취득행위가 존재하게 되면 그에 대한 조세채권이 당연히 성립하고, 매매계약으로 인하여 매수자가 일단 부동산을 적법하게 취득한 다음에는 그 후 합의에 의하여 계약을 해제하고 그 부동산을 반환하는 경우에도 이미 성립한 조세채권의 행사에 영향을 줄 수 없다(대법원 1998. 12. 8. 선고 98두14228 판결 등 참조).

그런데 매매계약이 무효이거나 취소된 경우에는 처음부터 취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사실상의 취득행위가 있다고 할 수 없으나, 조세소송에서 과세처분의 위법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시기는 그 처분 당시라 할 것이어서 착오를 이유로 매매계약의 취소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 착오의 내용이나 매매 의사표시를 취소하는 목적 등에 비추어 볼 때 사실상 과세처분이 이루어진 이후의 사정에 근거한 것으로서 그 실질에 있어서는 과세처분 후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는 그 취소로 인한 취득세 과세처분의 효력에 대하여도 합의해제에 관한 위 법리가 그대로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13. 6. 28. 선고 2013두2778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판단

위 법리를 바탕으로 앞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3-05-31

는 아래와 같은 사실 내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매매계약은 착오에 의하여 취소되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원고 앞으로 마쳐졌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었고, 그 실질이 취득세 등의 신고·납부 이후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는 것에 불과한 경우에 해당하지도 않으므로, 취득세 등의 과세대상이 되는 사실상의 취득행위가 있다고 할 수 없어 원고에게 취득세 등의 납세의무가 성립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취득세 등은 모두 0원으로 경정되어야 하므로 이를 거부한 피고의 이 사건 거부처분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① 원고가 매도인인 B와 매도인 측 중개인인 E으로부터 이 사건 부동산에 '큰방', '야외테라스' 부분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설명을 듣고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이 사건 부동산 중 '큰방' 부분은 공용부분인 옥상에 건축허가 없이 증축된 것이고, '야외테라스' 부분은 위 옥상에 임의로 시설물을 설치한 것이어서, 원고는 해당 부분을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없고 향후 이를 철거해야 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이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그 중요부분에 관한 착오에 빠져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던 것이고, 그러한 착오는 매도인 측에 의하여 유발된 것으로 볼 수 있다.

② 관련 민사소송에서 확정된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에는 '원고와 B는 이 사건 매매계약이 이 사건 부동산의 건축법 위반 사실 존부에 관한 착오로 인하여 취소되었음을 확인한다'라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 확정된 화해권고결정은 민사소송법 제231조, 제220조에 따라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앞서 본 바와 같이 그 체결 당시부터 민법 제109조가 정하는 취소사유가 있었던 이 사건 매매계약은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의 확정으로써 그 취소가 인정되어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게 되었다.

③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뒤 그로부터 22일만에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3-05-31

B, E을 상대로 관련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 관련 민사소송에서 원고와 B는 각자 변호사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여 공방을 펼쳤고, 법원은 약 11개월 동안의 실질적인 변론과 증거조사를 거친 뒤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을 내렸다. 또한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에는 'B가 원고에게 261,350,000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위 261,350,000원에는 매매대금 255,000,000원과 원고가 주장하는 손해배상금 일부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와 B가 실제로는 이 사건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였으면서도 조세회피의 의도나 목적을 가지고 이 사건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도록 하는 외관을 만든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④ 이에 대하여 피고는 구 지방세법 시행령(2021. 12. 31. 대통령령 제322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2항 단서가 '취득물건을 등기·등록하지 아니하고 60일 이내에 화해조서·인낙조서 등으로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는 것의 반대해석상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등기를 이미 마쳤던 원고에 대하여는 사실상의 취득행위 자체를 부정할 수 없다는 취지로도 주장한다. 그러나 위 조항은 계약해제가 이루어졌음에도 취득세 과세를 하지 않는 예외적인 경우를 규정하는 것으로, 이 사건과 같이 매매계약이 착오를 이유로 취소되는 경우에 적용될 것은 아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3-05-31

재판장 판사 ○○○

판사 ○○○

판사 ○○○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3-05-31

관계 법령

■ 구 지방세기본법(2023. 3. 14. 법률 제192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0조(경정 등의 청구)

① 이 법 또는 지방세관계법에 따른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및 제51조 제1항에 따른 납기 후의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이 있음을 안 날(결정 또는 경정의 통지를 받았을 때에는 통지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를 말한다]에 최초신고와 수정신고를 한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 등을 말한다)의 결정 또는 경정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 신고서 또는 납기 후의 과세표준 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지방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2. 과세표준 신고서 또는 납기 후의 과세표준 신고서에 기재된 환급세액(「지방세법」에 따른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결정 또는 경정 후의 환급세액을 말한다)이 「지방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환급세액보다 적을 때

②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또는 지방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을 받은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제1항에서 규정하는 기간에도 불구하고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결정 또는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의 판결(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는 화해나 그 밖의 행위를 포함한다)에 의하여 다른 것으로 확정되었을 때
2. 조세조약에 따른 상호합의가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의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졌을 때
3. 제1호 및 제2호의 사유와 유사한 사유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해당 지방세의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3-05-31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발생하였을 때

■ 구 지방세법(2023. 3. 14. 법률 제192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정의)

취득세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이란 매매, 교환, 상속, 증여, 기부,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건축, 개수(개수), 공유수면의 매립, 간척에 의한 토지의 조성 등과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취득으로서 원시취득(수용재결로 취득한 경우 등 과세대상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승계취득 또는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

제7조(납세의무자 등)

①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입목, 광업권, 어업권, 양식업권, 골프회원권, 승마회원권, 콘도미니엄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회원권 또는 요트회원권(이하 이 장에서 "부동산등"이라 한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② 부동산등의 취득은 「민법」, 「자동차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 「항공안전법」, 「선박법」, 「입목에 관한 법률」, 「광업법」, 「수산업법」 또는 「양식산업발전법」 등 관계 법령에 따른 등기·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다만,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취득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 구 지방세법 시행령(2021. 12. 31. 대통령령 제3225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취득의 시기 등)

②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날에 취득한 것으로 본다.

1. 법 제10조 제5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사실상의 잔금지급일
2. 제1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유상승계취득의 경우에는 그 계약상의 잔금지급일(계약상 잔금지급일이 명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계약일부터 60일이 경과한 날을 말한다). 다만, 해당 취득물건을 등기·등록하지 아니하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에 의하여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증되는 경우에는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

가. 화해조서·인낙조서(해당 조서에서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입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3-05-31

증되는 경우만 해당한다)

나. 공정증서(공증인이 인증한 사서증서를 포함하되,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공증받은 것만 해당한다)

다.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계약해제신고서(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제출된 것만 해당한다)

라. 부동산 거래신고 관련 법령에 따른 부동산거래계약 해제등 신고서(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등록관청에 제출한 경우만 해당한다)